

##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폐업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 업종	등록말소 년월일	폐업 사유	비고
주식회사 광개토건설 (김정환)	151311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4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충북영동14-07-01)	'15. 3. 2.	사업 포기	자진 반납